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 제한 아동관련기관 확대 등〉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46호)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981호)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15호)
- 김태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289호)
- 한지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47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검토의견	8
1. 개정안의 주요내용	8
2. 제도 현황 및 연혁	29
3. 검토사항	34
가. 학습부진아 용어 변경	34
나.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 추가	36
다.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요청 및 간주	44

I. 제안경위

1.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4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05. 21.

(3) 회 부 일 : 2026. 05. 22.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

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6항 신설).

2.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98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07. 15.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3.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01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07. 16.

(3) 회 부 일 : 2026. 0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4.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28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7. 30.
- (3) 회 부 일 : 2026. 0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5.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47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08. 06.
- (3) 회 부 일 : 2026. 08. 0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 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

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5개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전력조회 주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임.
- 먼저 강경숙의원안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등을 추가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부 아동관련기관 취업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안 제29조의4).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 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 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 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 업제한 등) ① ----- ----- ----- ----- ----- ----- -----

[illegible]

1. ~ 17. (현행과 같음)
18. -----

법 제28조에 따라 <u>학습부진</u> <u>아</u>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는 기관	-----<u>학</u> <u>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u>- ----- -----
19. ~ 28. (생 략) <u><신 설></u>	19. ~ 28. (현행과 같음) 29.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u> <u>관한 법률</u>」 제12조에 따른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u>
<u><신 설></u>	30. 「<u>제주특별자치도 설치</u> <u>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u> <u>한 특별법</u>」 제223조에 따 <u>른 국제학교</u>
<u><신 설></u>	31. 「<u>경제자유구역 및 제주</u> <u>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u> <u>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u> <u>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외 <u>국교육기관 중 「유아교육</u> <u>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u>치원 또는 「초·중등교육</u> <u>법</u>」 제2조에 따른 각급 학
<u><신 설></u>	<u>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u> <u>관</u> 32. 「<u>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u> <u>교육법</u>」 제11조에 따른 특 <u>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u> <u>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u>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
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 한정한다)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
된 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
관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
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
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
는 기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

⑧ -----제7항-----

-----.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1. (생략)

<신설>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 5. (생략)

<신설>

-----.

1. ~ 21. (현행과 같음)

22. 제29조의3제1항제29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4. · 5. (현행과 같음)

6. 제29조의3제1항제30호의

<u><신 설></u>	<u>국제학교</u>
	7. <u>제29조의3제1항제31호의</u>
	<u>외국교육기관</u>
<u><신 설></u>	8. <u>제29조의3제1항제32호의</u>
	<u>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u>
	<u>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u>
	<u>는 기관</u>
<u><신 설></u>	9. <u>제29조의3제1항제33호의</u>
	<u>교육기관</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다음으로 안상훈의원안(2219981)은 아동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관련기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추가하고, 교육 지원 대상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
 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
 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
 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
 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
 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
 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
 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
 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
 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
 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
 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u>학습부진아</u>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8. ----- ----- ----- <u>학업에 어려움</u> 을 겪는 <u>학생</u> ----- -----
19. ~ 28. (생략)	19. ~ 28. (현행과 같음)
<u><신설></u>	29. 「 <u>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2조제4호에 따른 <u>보건진료소</u>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u><신설></u>	30. 「 <u>지역보건법</u> 」 제30조제3항에 따라 <u>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u> <u>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포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② (생략)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포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관	③ ----- -----

런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1. (생략)

<신 설>

<신 설>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illegible]

1. ~ 21. (현행과 같음)

22. 제29조의3제1항제29호의
보건진료소

23. 제29조의3제1항제30호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④

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u>학습부진아</u>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 5. (생략) ⑤ ~ ⑦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3. ----- ----<u>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u>----- - 4.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

□ 다음으로 안상훈의원안(2220015)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관련기관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 위탁 비영리법인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영업소를 추가하고, 해당 기관들에 대한 취업 여부 점검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 ----- -----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8. (생략)

<신 설>

<신 설>

② ~ ⑦ (생 략)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포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② (생 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관

2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장애
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가
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
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
한다)

30. 「식품위생법」 제36조제

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
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또는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
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가 설치된 영업소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
업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포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생략)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 28.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

1. ~ 17. (현행과 같음)

18. -----

-----학
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19. ~ 2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
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 ③ (생략)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⑧ -----제7항-----

-----.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u>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u> 4.·5. (생략) ⑤ ~ ⑦ (생략)	-----. ----- ----- -----. 1.·2. (현행과 같음) 3. ----- ---<u>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 을 겪는 학생</u>----- ----- 4.·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	---

□ 마지막으로 한지아의원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 및 학
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유치원의 취업자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
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 및 같은 조 제6항·제7항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 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 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 업제한 등) ① ----- ----- ----- -----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생략)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 27.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19.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⑦ 제6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u>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 ----- -----. ⑨ -----제8항----- ----- ----- ----- -----.
--	--

2. 제도 현황 및 연혁

□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약식명령을 포함)과 동시에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취업 등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이때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 취업제한기간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¹⁾.

□ 아동학대관련범죄란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②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함. 각 법률의 해당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1)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7.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내용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정의)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 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한편,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으로는 아동권리 보장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으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1.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 위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은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2020년 이후를 살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관련 기관, 산후조리원, 입양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대안교육기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이 추가되었음.

< 2020년 이후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 추가 연혁 >

시행일	추가 기관
2020. 4. 7.	다함께돌봄센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021. 3. 30.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2021. 12. 2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

2024. 8. 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2025. 7. 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025. 10. 2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026. 2.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2026. 4.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주: 기관 명칭 변경이나 인용조항 정비 등은 최신 개정을 기준으로 작성함

3. 검토사항

가. 학습부진아 용어 변경

- ☐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 관련기관으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음²⁾.
- ☐ 이에 4개 개정안은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있음.

< ‘학습부진아 등’의 용어 변경 >

현행	강경숙의원안	안상훈의원안 (19981)	김태선의의원안	한지아의의원안
학습부진아 등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 ☐ 개정안은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용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954호, 2021.3.23., 타법개정]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096호, 2022.12.27., 일부개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호의 구분에 따른 <u>학생들</u>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고 한다)</u>----- ----- ----- -----.
--	---

나.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 추가

- 3개 개정안[강경숙의원안, 안상훈의원안(19981), 안상훈의원안(20015)]은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³⁾.

< 개정안 중 취업제한 아동관련기관 추가 내용 >

강경숙 의원안	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학교 3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안상훈 의원안 (19981)	2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30.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
안상훈 의원안 (20015)	29.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 30.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또는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영업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소

3) 나아가 3개의 개정안은 추가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의 취업 등 점검·확인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있음(각 안 제29조의4).

□ 강경숙의원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 유사한바, 양 법률의 관계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각 호 외의 부분 생략) 1. ~ 2의2. (생략)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 6. (생략)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 18. (생략)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삭제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 26. (생략)

□ 안상훈의원안(19981)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료인에 한정),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며(같은 법 제2조제4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지방공무원임(같은 법 제2조제3호·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u>보건진료 전담공무원</u>”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u>보건진료소</u>”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2025년 12월 기준 전국 보건진료소는 1,894개소가 있고, 인력은 1,829명인데 동 인력은 전원 의료인임.

〈보건진료소 설치 및 의료인 현황〉

(단위 : 개소, 명)

지역	설치 현황	인력 현황	
		의료인	의료인 외
서울특별시	0	0	-
부산광역시	5	4	-
대구광역시	18	18	-
인천광역시	25	25	-
광주광역시	10	10	-
대전광역시	7	7	-
울산광역시	11	11	-
세종특별자치시	7	7	-
경기도	154	147	-
강원특별자치도	129	129	-
충청북도	158	157	-
충청남도	236	237	-
전북특별자치도	237	229	-
전라남도	330	313	-
경상북도	299	287	-
경상남도	220	200	-
제주특별자치도	48	48	-
계	1,894	1,829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아동 등에게 진찰·검사, 예방 접종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19조)⁴⁾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참고로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 결격사유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규정되어 있음(같은 법 제31조제6호의4).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 6의3. (생략)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마. (생략)

- 한편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⁵⁾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를 아동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위탁·대행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가 넓

5)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로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 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 안상훈의원안(20015)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또는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영업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소를 아동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6).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한 결격사유 제도를 이미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21조의2). 다만 동 결격사유는 취업제한과 달리 주기적으로 점검⁷⁾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영업소”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있는데, 2027년 2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의 개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현 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26. 2. 27. 일부개정, 2027. 2. 28. 시행)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u>놀이터</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u>놀이터</u>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u>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u>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요청 및 간주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

○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법 제29조의3제5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정안(강경숙의원안·김태선의원안·한지아의원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한지아의원안은 전력조회 “요청” 이외에 “확인”도 추가하고, 나아가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음 (안 제29조의3제6항).

< 개정안 비교 >

구분	강경숙의원안	김태선의원안	한지아의원안
전력조회 요청·확인 등		전력 조회 요청 가능	전력조회 요청·확인 가능.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
대상 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한지아의원안이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 대한 전력 조회 간주규정을 둔 것은, 현행법에서 취업자등이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 대한 전력 조회 간주 규정(법 제29조의3제5항 단서)⁸⁾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

으로 보임.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일정한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3개의 개정안은 동 입법례와 유사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이 강사 등을 직접 채용하기보다 교육청이 일괄 모집하여 각 기관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여러 기관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력 조회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력 배치 전에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교육기관 배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별 기관의 조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보건복지부는 유치원,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자로 교육감·교육장을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